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이민희 위원 아까 저희들 간담회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60km 이상 그 거리 말씀하셨죠. 위원들에 대한?

○임현웅 위원 그것은 기타 안전에...

○이민희 위원 기타 안전에..... 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재근 일단은 의사일정안을 의결을 하시고 그것은 기타안전 토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근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년월일 : 1997. 1. 2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1. 주 문

-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7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실·국별 업무보고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기타안전처리

## 3. 기타사항

○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별첨

## 의사일정안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997. 1. 30 ~ 2. 5 (7일간)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1월30일(목) 14 : 00 14 : 15	<p style="text-align: center;">&lt; 개 회 식 &gt;</p> <p style="text-align: center;">&lt; 제 1 차 본 회 의 의 &gt;</p> <p>1.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1997. 1. 30 ~ 2. 5 (7일간)</p> <p>2. 도정보고 (교육시책 포함)</p> <p>3. 기타안건 처리</p>	
1월 30일(목)	<p><input type="checkbox"/> 의원 연찬회</p> <p>· 일 시 : '97. 1. 30(목) 15:00~17:00 (2시간 정도)</p> <p>· 과 목 : 조례규정관련 법률상식 등</p>	
1월 31일(금) ~ 2월 4일(화)	<p style="text-align: center;">&lt; 휴 회 &gt;</p> <p><input type="checkbox"/> 상임위원회 활동</p> <p>· 실·국별 주요업무보고</p> <p>· 안전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p>	※2월2일 (일요일)
2월 5일(수) 11 : 00	<p style="text-align: center;">&lt; 제 2 차 본 회 의 의 &gt;</p>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 부의안건 처리 2. 기타안건 처리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1분)

○위원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 및 활동기간을 협의 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지역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여 총 14명으로 선임을 하되 특정 상임위원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정당별 위원 수에 비례하여 안배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임기와 같이 '9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선임은 이러한 원칙 아래 의장

단에게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존속기간 선임 방법은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 토의 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지 조정여비 조례 거리를 다른 광역시·도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충청북도의회와 같이 60km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60km로 되어 있고 인천의 경우만 도서지역에 한해서 거리에 상관없이 원격지 조정 여비를